

'97 공동방역사업실시단 방역장비 지원계획

- 농 릫 부 -

1. 사업목적

○시군의 축종별 공동방역사업단에게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차량, 냉장고, 소독기등 방역장비 지원하여 전염병근절대책의 효율적 추진

2. 추진방향

- 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 중심의 지역공동방역사업 실시로 가축전염병 근절목표 달성
- 공동방역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방역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단 확대 설치유도
 -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와 방역요원 동원수당등 운영비는 사업단이 대상농가로 부터 실비징수로 충당

3. 연차별 지원계획

구분	'97계획	'98	'99이후	계	
사업량	50 개소	100	100	250	
사업비	계	3,025	6,050	6,050	15,125
	기금보조	2,117.5	4,235	4,235	10,587.5
	자담	907.5	1,815	1,815	4,537.5

4. '97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지원배경

- '96. 6. 8 : 주요가축전염병근절대책 수립
- 지역별 공동방역사업 추진
- '96. 12. 31 : 공동방역사업실시단 운영요령 훈령제정
- '97. 3. 28 : 공동방역사업 지원 기본방침 확정
 - 시군사업단에 냉장고, 방역차량, 소독장비등 지원

○지원대상자

-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에 의거 사업단을 설치한 시군의 축종별 사업단

○선정기준

- 축종별 사업단중 자부담 능력이 있고 경영상태가 양호한 사업단
- 사업단 운영주체의 성격상 계열주체, 업종조합, 양돈·양계협회, 지역축협 순서

〈표-1〉 개소당 지원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단가	물량	사업비(추발기금)			비고
			계	보조	자담	
예방약냉장고	10,000	2개	20,000	14,000	6,000	1000 l 용
방역차량	20,000	1대	20,000	14,000	6,000	9인승 지프
휴대용냉장박스	300	5개	1,500	1,050	450	차량탑재용
연막분무기	1,000	3대	3,000	2,100	900	휴대용
고압세척소독기	4,000	1	4,000	2,800	1,200	냉온수겸용
고압멸균기	3,000	1	3,000	2,100	900	오토클래브
병성감정기구세트	1,000	1세트	1,000	700	300	부검, 시료채취기등
철제자동주사기	100	20개	2,000	1,400	600	
의료기구소독기	2,000	1	2,000	1,400	600	
PC 및 프린터	4,000	1대	4,000	2,800	1,200	
계		10종, 36대	60,500	42,350	18,150	

- 축종별로는 돼지, 닭, 소 순서
- 사업단 구성인원과 사육규모가 큰 사업단 순서

○ 지원규모 : 1,524,600천원

(36개소 × 60,500천원 × 70%)

- 개소당 지원한도 : 42,35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담 30%

나. 개소당 지원 세부내역(표-1)

다. '97 지원대상

○ 지원대상 총괄

구분	지역축협	업종조합	협회지부	계열주체	계
돼지	11	5	9	1	26
닭	1	4	1	3	9
소	1	-	-	-	1
계	13	9	10	4	36

○ 지원대상 세부내역

구분	사업단명	사업주체	축종	대표자	지원액
경기	포천공동방역사업단	포천축협	돼지	박준수	42.35
	평택공동방역사업단	평택축협	돼지	이종후	42.35
	이천양돈방역사업단	도드람	돼지	진길부	42.35
	이천양계방역사업단	양계협회	닭	임상철	42.35
	소 계	4			169.4
강원	철원공동방역사업단	철원축협	돼지	이수환	42.35
	강릉양돈방역사업단	양돈축협	돼지	조찬규	42.35
	소 계	2			84.7

구분	사업단명	사업주체	축종	대표자	지원액
충북	제천공동방역사업단	제천축협	돼지	조봉구	42.35
	충주양계방역사업단	양계축협	닭	강문달	42.35
	진천양계방역사업단	체리브로	닭	김인식	42.35
	소 계	3			127.05
충남	서산공동방역사업단	서산축협	소	강춘식	42.35
	천안양돈방역사업단	양돈축협	돼지	송건섭	42.35
	홍성공동방역사업단	홍성축협	닭	정계동	42.35
	홍성양돈방역사업단	양돈협회	돼지	김진태	42.35
	당진양돈방역사업단	양돈협회	돼지	손종선	42.35
	예산양돈방역사업단	양돈협회	돼지	고동순	42.35
	아산양돈방역사업단	양돈협회	돼지	김명식	42.35
	천안양계방역사업단	양계축협	닭	현광대	42.35
	소 계	8			338.8
전북	완주양돈방역사업단	양돈협회	돼지	이택교	42.35
	김제양계방역사업단	양계축협	닭	이기동	42.35
	익산양계방역사업단	하림	닭	김홍국	42.35
	군산양계방역사업단	동우	닭	정창영	42.35
	소 계	4			169.4
전남	장흥공동방역사업단	장흥축협	돼지	김용덕	42.35
	나주공동방역사업단	나주축협	돼지	김복동	42.35
	순천공동방역사업단	순천축협	돼지	황금영	42.35
	보성공동방역사업단	보성축협	돼지	김연수	42.35
	화순양돈방역사업단	양돈축협	돼지	전재명	42.35
소 계	5			211.75	
경북	영천공동방역사업단	영천축협	돼지	도영대	42.35
	칠곡양계방역사업단	양계축협	닭	류종래	42.35
	소 계	2			84.7
경남	사천공동방역사업단	사천축협	돼지	정기호	42.35
	김해양돈방역사업단	양돈축협	돼지	신태식	42.35
	고성양돈방역사업단	양돈협회	돼지	이영춘	42.35

구분	사업단명	사업주체	축종	대표자	지원액
	거창양돈방역사업단	양돈협회	돼지	최영열	42.35
	합천양돈방역사업단	양돈협회	돼지	안석환	42.35
	울산양돈방역사업단	양돈협회	돼지	유재환	42.35
	소 계	6			254.1
제주	남제주공동방역사업단	남제주축협	돼지	김영훈	42.35
	제주양돈방역사업단	양돈축협	돼지	오경옥	42.35
	소 계	2			84.7
총 계	36			1,524.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가축위생과
- 사업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축산기술환경부

나. 사업시행

- (1) 구입완료시기 : '97. 7월말(방역차량과 냉장고는 '97. 6월말까지 구입)
- (2) 사업비 집행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유용 또는 전용하거나 지원된 장비를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자금집행은 예산회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방역차량, 예방약 보관냉장고, 차량탑재 냉장 박스는 축협중앙회에서 일괄 구입하여 공급
 - 방역차량은 색상 및 표식방법 통일, "별첨"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차량 색상 및 표시문안을 참조하여 제작
 - 분무기, 소독기, 멸균기, PC 및 프린터등은 사업단별로 사업단설정에 맞게 사업비 한도 내에서 물량을 조정하여 구입
 - 차량구입시 법인 또는 단체로 등록되지 않

은 양돈·양계협회 시군지부의 경우 차량등록 및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농조합법인등을 결성하는 방안 권장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책임자 : 시군별 축종별 공동방역사업실시단장
 - 감독기관 : 축협중앙회장
- 시군별, 축종별 사업단장은 사업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장비운영, 방역약품수급, 방역요원관리,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기재토록 할 것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가축방역장비	5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

나. 정부 가축방역 약품 지원

- 시장·군수는 '97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가축방역사업중 예방주사 약품과 실시재료비를 해당 축종별 사업단에게 우선하여 지원하되 예방약품은 현물로 지급
 - 지원 예방약품 : 탄저·기종저,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단, 뉴캐슬병 예방약은 시군 양계방역사업단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단이 지정한 부화장에 소요물량을 지원,
 - 실시재료비 : '97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된 예방주사별 실시재료비(지방비)는

해당 시군사업단에게 지원

○정부지원 예방약품중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은 영요령(농림부훈령 제882호를 말하며, 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사업단 지원약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전염성비기 관염, 소유행열, 소아까바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전염성위장염 예방약품도 사업단이 원하는 경우에 해당 예방약품과 예방주사 실시에 필요한 실시재료비를 지원

- 시장군수는 '97 사업계획물량 범위내에서 사업단이 요구하는 물량을 전량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사업단에서 요구하는 물량에 비하여 해당시군 배정물량이 부족할 경우 사업단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물량을 감액하여 사업단 설치 시군에 증액지원하는 방안 강구)

○사업주체가 업종조합 또는 계열주체가 되는 경우 해당사업단이 2개이상 시군을 관할하게 되므로 예방약 지원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해당사업단에 타 시군소재 회원농가와 계열농가에게도 지원할 물량을 포함하여 지원토록 조치

다. 사업단 운영비용등의 결정 및 징수

○운영비용등 기준액 결정기관 : 훈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시군 공동방역 협의회

○비용의 세부내역 : 예방주사 실시비용, 사업단 사무실 관리비, 사업단원 인건비(사업단원으로 지정된 축협도지회, 지역축협, 업종조합, 계열주체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제외), 회의비, 방역복 구입비, 제세공과금 등

○징수대상 : 시군공동방역사업단에 참여하여 사업단으로부터 예방주사 등 방역사업을 지원받는 농가

○징수기관 : 훈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축종별 사업단장이 징수(중앙사업단

과 시도사업단은 운영비등을 징수할 수 없음)

라. 예방주사 실시

○예방주사는 훈령 제5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거 공개업 수의사 지도하에 사업단의 방역요원이 농장별 방문 실시

- 사업단에 참여한 농가중 농장여건상 사업단 방역요원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개업 수의사 지도하에 실시

○훈령 제5조 제2항의 방역요원은 상근직이 아니므로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기간에만 고용하여 활용함으로써 대상농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 방역요원 인원은 축종별 시군사업단장이 해당사업단 참여농가의 가축수를 감안하여 정함.

○농장을 방문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공개업 수의사와 방역요원은 예방주사 실시로 인한 농장간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일회용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방역관리 철저

○훈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시군사업단장 또는 축종별 시군사업단장이 예방주사를 실시한 농가를 대상으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사업단장은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해당 예방접종실시자 대표(사업단 참여 공개업수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발급

마. 공수의 위촉 및 활용

○시장·군수는 시군 축종별사업단에 국비 및 지방비 공수의를 우선하여 지원

- 시도지사는 사업단을 설치한 지역의 공수의 위촉인원이 부족할 경우 사업단을 설치하지 않는 시군의 공수의를 사업단설치 시군으로 조정 배치

- 공수의 수당은 훈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사업단장 또는 축종별 시군사업단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수의동원 확인서에 의거 공수의 수당 지급
- 지방비로 공수의 예방주사 시술비를 지급하는 시도의 경우 해당 시술비를 사업단의 방역요원 동원수당으로 보조하는 방안 강구

바. 살처분 가축 보상평가 참여

- 시장·군수는 살처분 가축 보상금 평가시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농림부 고시 제1997-31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살처분 대상 가축의 축종별 시군사업단원 1명을 참여토록 살처분 가축 보상금 차등지급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 보상금 평가시 시군사업단원을 참여시키는 사유는 사업단원으로 하여금 전염병 발생신고시기, 예방주사 및 검진실시여부, 농장내 방역관리 실태등을 객관적으로 검증케 하기 위함.

사. 시도 및 시군사업단 구성에 따른 업무조정 등

- 시도사업단장 또는 시군사업단장은 축종별 사업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업종조합·계열주체·지역축협간의 공동방역 업무추진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 조정하거나 해당 공동방역협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타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완료 즉시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에 의거 중앙사업단장은 사업단평가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는 사업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자금 차등지원등 업무에 반영토록 할 것

공동방역차량 색상 및 표시문안

- | | |
|-----------------------------|---------------------|
| 1. 차종 : 겔로퍼 9인승 기준 | - 운전석·조수석 문 상단부(양측) |
| 2. 차량색상 : 은백색(Super Silver) | ○ 사업단 표시 |
| 3. 글자색상 : 진녹색(Mica Green) | - 양측후방 중앙부 |
| 4. 표시문안 내용 및 위치 | 5. 글꼴 및 크기 |
| ○ 가축공동방역 | ○ 아래아 한글 "휴먼엣체" |

가 축 공 동 방 역

- 사업단 표시예
 - 지역축협 : 평택축협
 - 업종조합 : 충북 양돈조합, 대구·경북양계조합
 - 협회 : 흥성양돈협회
 - 계열주체 : 하림 익산양계 방역